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예고기간 : 2017. 9. 5.(화) ~ 2017. 9. 10.(일)

나. 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월) 10시까지

다.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건강기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고순희·오윤배 의원

1. 제안이유

-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형식 및 발행주기(안 제3조)
- 나. 게재사항(안 제5조)
- 다. 주민참여 등(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9. 10.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광명시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회소식”이라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고순희·오윤배 의원

1. 제안이유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1일전 18시까지 후보등록을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게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부여(안 제8조의3제1항)
- 나.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순으로 함(안 제8조의3제2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 전 18시까지(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별지 제1의2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직위			
<p>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명시의회사무국 귀중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의3(의장 ·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 전 18시까지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p> <p>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p> <p>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일

발 의 자 : 이길숙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고순희·조희
선·김정호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사항 역시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안 제16조의 2)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명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길숙 (2680-2539)

[별지 제7호의2 서식]

광명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의원

(인)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명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7호의 2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1일

발 의 자 : 조희선 의원

찬 성 자 : 김정호·오윤배 의원

1. 제안이유

- 인구 증감에 따라 시정 소식지 양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행부수 조정(안 제9조제2항)

나. 우편발송은 발행부수의 20% 이하로 발송하도록 조정(안 제11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이 필요한 경우**”를 “**시장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긴급히 홍보할 사안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집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행 부수는 세대수의 5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하고 연 단위로 인구 및 세대수 증·감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편 발송은 발행부수의 20% 이하로 발송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홍 보 실
입 안 자	의원 조희선 (2680-2542)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7월 3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조희선·김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광명시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5.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이 위원 중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 공동단장이 함께 지명한 3명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 고용경제국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그 밖의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창출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지원단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일자리소통관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사무국) 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직원은 지원단의 지원업무와 채용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지원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④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지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2개월마다 단장이 소집하는 날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 ③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지원단은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시장은 지원단의 활동비, 간담회, 특강, 현장방문,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고 순 희 (2680-2532)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김기춘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역협의체의 활동 활성화, 실행 가능한 정책생산을 위해서 민관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주민협의체, 민·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 그룹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광명시 에너지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용·보급 관련 내용 등 추가(안 제12조)
- 위원회 구성에서 공동위원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 위원수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안 제13조제2항)
- 위원회 회의 연간 2회 상·하반기 개최(안 제18조제1항)
- 에너지센터 설립(안 제19조)
- 에너지센터의 기능(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명시 에너지위원회**” 를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 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활성화를**” 을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용·보급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를 “**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 로, “**15명**” 을 “**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을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을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무책임자 또는 시민단체·에너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3조제5항 중 “**간사와 서기**” 를 “**간사**” 로, “**과장,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주사**” 를 “**과장으**”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위원장**” 을 “**공동위원장**”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을 “**공동위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를 “**공동위원장과**” 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은**” 을 “**위원회는 연간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을 “**공동위원장**” 으로 한다.

제18조 다음에 “**제6장 광명시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을 삽입한다.

제6장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에너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의 기능) ① 에너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②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③ 지역에너지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및 소관	기업경제과
입안	의원 안성환 (02-2680-2520)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광명시 에너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2. (생략)</p> <p>3. 에너지절약 <u>활성화</u>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p> <p>4. <u>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u></p> <p>5. <u>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u></p> <p>6. (생략)</p> <p>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u>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제11조(위원회 설치·운영) ----- ----- ----- “<u>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u>”----- -----.</p> <p>제12조(기능)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용·보급을</u> -----</p> <p>4. <u>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u></p> <p>5. <u>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u></p> <p>6.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 <u>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u> ----- ----- <u>20명</u> -----.</p>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5.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6.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무책임자 또는 시민단체·에너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간사-----
----- 과장으-----
-----.

제15조(공동위원장 직무) ① 공동위원장-----
-----.

② -----

----- 공동위원장과

-----.

제17조(회의) ① 시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장-----
-----.

제6장 광명시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제19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
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에너지센
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의 기능) ① 에너
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②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
·기업 포럼)
③ 지역에너지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
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1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나상성 의원

1. 제안이유

- 민간기업과의 업무 확대와 복식회계 도입 등으로 인해 재무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상시 받을 수 있는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인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나.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재정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안 제4조)
- 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명을 위촉할 시 1명은 광명시 1명은 외부에서 임명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
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회 계 과
입 안	의 원 김 기 춘 (02-2680-2537)

[별지 1호 서식]

위 축 장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 ○ ○

귀하를 「광명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시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별지 2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연번	구 분	의 퇴 연월일	자문의퇴내용	회 신 연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김정호·조희선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에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후나 공휴일에 SNS(카카오톡 등)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
- 광명시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24시간 임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기타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사생활 보호)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u>제16조의3(사생활 보호)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관 계 범 령 발 칙 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

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김기춘 의원

1. 제안이유

- 「자살예방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명칭을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병기하여 표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존중센터 명칭 병기 표기(안 제5조제2항제4호)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자살예방센터의”를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및 소관	건강생활과
입 안	의원 안성환 (02-2680-2520)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p> <p>1. ~ 3. (생략)</p> <p>4. <u>자살예방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p> <p>5. ~ 8. (생략)</p> <p>제8조(<u>자살예방센터의 설치</u>) ①·② (생략)</p>	<p>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u>----- -----</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8조(<u>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의 설치</u>) ①·② (현행과 같음)</p>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이길숙·이영호·조화영·고순희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 지원금액(안 제5조)
- 지원 절차(안 제6조)
- 환 수(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제31조, 제117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4.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광명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② 시장은 제2조제5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 대상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광명시 주민등록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 .
학교명	중.고등학교 1학년		
주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	-------------------------------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관계 법령 발췌서

□ 헌 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는 2016. 1. 1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신설되었기에 동 시행령과 대조되는 현행 조례의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면적, 설치기준 등은 삭제되어야 하며
-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편의나 구조 및 안전 등에 위해가 없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광명시 건축조례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면적, 설치기준 등은 삭제하고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용도 확대(안 제21조제3항제5호 및 제4항)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 임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각 호(제2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 관	주택안전과
입 안	의 원 고 순 희 (02-2680-25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4.(생략)</p> <p>5. <u>조립식구조, 콘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야외 흡연실로 사용되는 시설</u>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u>면적 20평방미터 이하로서 지상 1층 또는 옥상층에 설치하는 것</u></p> <p>나. <u>강제 배연설비를 갖출 것</u></p> <p>다. <u>벽면의 구조는 50퍼센트 이상의 투시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할 것</u></p> <p>라. <u>그 밖에 야외 흡연실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일 것</u></p> <p>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u>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설건축물</u></p> <p>2. (생략)</p>	<p>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4.(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④ ----- ----- -----.</p> <p>1. <u>영 제15조제5항에 각 호(제2호, 제4호, 제5호, 제11호, 제1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u></p> <p>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2016.1.19.신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⑩ 삭제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기춘·김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온수관 교체비용을 추가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온수관 교체비 지원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급수배관” 을 “급수배관·온수관(온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난방관으로 대체)” 으로 한다.

별표 1 중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급수공사와 온수 및 난방공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3의 공사규모란 중 “노후급수관” 을 “노후급수관·노후온수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주택안전과
입 안	안성환 의원 (02-2680-25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대상) 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은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단지 안의 <u>급수배관 교체</u>(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에 한하되, 전유부분의 시설 제외)</p> <p>8. ~ 10. (생략)</p> <p>② (생략)</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 지 규 모</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세대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이미 지원받았던 장소의 시설물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의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은 7년으로 한다.</p> <p><신 설></p>	단 지 규 모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1,000세대 미만	2년 이내	1,000세대 이상	3년 이내	<p>제5조(지원 대상) ①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급수배관 · 온수관(온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난방관으로 대체)</u> -----</p> <p>8.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 지 규 모</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세대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내</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이미 지원받았던 장소의 시설물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의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은 7년으로 한다.</p> <p>2. <u>급수공사와 온수 및 난방공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단 지 규 모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1,000세대 미만	2년 이내	1,000세대 이상	3년 이내
단 지 규 모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1,000세대 미만	2년 이내												
1,000세대 이상	3년 이내												
단 지 규 모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												
1,000세대 미만	2년 이내												
1,000세대 이상	3년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7조제2항 관련)</p>	<p>[별표 3]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제7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공사 규모</th> <th style="width: 80%;">지원비율 및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천만 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지원 상한금액</td> <td>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후급수관 교체비용</td> <td>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공사 규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공사 규모</th> <th style="width: 80%;">지원비율 및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노후급수관·노후온수관 교체비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공사 규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노후급수관·노후온수관 교체비용	현행과 같음
공사 규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2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 × 80%																														
3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2천8백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 × 70%																														
4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초과분 × 60%																														
5천만 원 이상 ~ 6천만 원 미만	4천1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 × 50%																														
6천만 원 이상 ~ 7천만 원 미만	4천6백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 × 40%																														
7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 × 30%																														
8천만 원 이상	5천3백만 원 + 8천만 원 초과분 × 20%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1,000세대 미만 : 50,000천 원 이하,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 60,000천 원 이하, 2,000세대 이상 : 70,000천 원 이하 ※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제외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세대당 300천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사 규모	지원비율 및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노후급수관·노후온수관 교체비용	현행과 같음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찬 성 자 : 오윤배·김정호·김익찬·
고순희·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개정에 따른 수탁기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혼란 해소

2. 주요내용

- 센터 수탁대상자의 범위 확대 규정(안 제9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조화영 (2680-250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p> <p>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p> <p>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p> <p>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p> <p>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p> <p>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p> <p>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p> <p>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p> <p>④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참고자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며.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찬 성 자 : 김정호·조희선·김익찬·
고순희·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안 제1조, 2조, 3조)
- 매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 계획 수립(안 제4조, 5조)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안 제6조)
-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지원(안 제7조)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9조)
-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 불 임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라 광명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무형문화재” (이하 “무형문화재” 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광명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장은 국가 및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광명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대상 여부
4.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문화체육과
입 안	의 원 조 화 영 (02-2680-2507)

관계법령 발췌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삭제 <2015.3.27.>

- 제73조 (경비부담) ①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 제53조의5(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전수교육비·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3조의6(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3조의11(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4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찬 성 자 : 김정호·김익찬·고순
화·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급수공사의 비용 부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사업자의 급수 설비 관리기준을 지수전에서 계량기까지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리
 - 가.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수전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 공지에 설치하거나”
 - 나. 조례 제12조제1항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 “배수관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 다. 조례 제12조제3항 중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급수설비의 관리자 범위 확대
 - 가.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내 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설비 관리자
가) 현행) 수도사용자 → 개정) 수도사업자
 - 나. 계량기가 건축물 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 대지경계선까지 급수설비 관리자 : 수도사업자
 -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설비 관리자 : 수도사용자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7. 9. 5. ~ 2017. 9. 10.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22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및 제12조

나. 기 타 : 해당 없음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지수전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를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 경계선” 으로, “설치한다” 를 “설치하거나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를 건축물 내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세대별 계량기 포함)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옥외” 를 “건축물 밖” 으로, “소유” 를 “소유로 하고, 건축물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를 시의 소유”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대지 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수 도 과
입 안	의 원 조 화 영 (02-2680-250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u>지수전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u></p> <p>③ <u>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지수전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u></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u>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u></p> <p>② 삭 제</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설치하거나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u><삭 제></u></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u>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를 건축물 내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세대별 계량기 포함)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u>소유</u>로 한다.</p> <p>④ <u>지수전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u></p> <p>⑤·⑥ (생략)</p>	<p>③ ----- <u>건축물 밖</u>----- ----- ----- <u>소유로 하고, 건축물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를 시의 소유</u> -----.</p> <p>④ <u>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u></p> <p>⑤·⑥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 수도법</p> <p>□ 수도법시행령</p> <p>□ 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p>	<p>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p> <p>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의 복합 건축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건물주 등의 신청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7></p>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지수전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지수전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p>

관 계 법 령	내 용
	<p>가 관리한다.</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3. 13></p> <p>② 삭제 <2015. 9. 30></p> <p>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 3. 13></p> <p>④ 지수전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3></p> <p>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3></p> <p>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 3. 13></p>

참 고 자 료

지자체명	내 용
서울시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안양시	<p>제7조(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 <p>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호별계량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각 호별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미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주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옥외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p> <p>④ 제3항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p>

지자체명	내 용
	<p>량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호별계량기만 관리한다.</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건축물 외부 1미터 이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고, 이후부터 건축물 방향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한다.</p>
시흥시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29></p>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별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0></p> <p>③ 삭제 <2010. 5. 12></p> <p>④ 삭제 <2015. 2. 10></p> <p>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배·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p> <p>② 배·급수관 분기지점부터 대지경계선 내 급수설비(수도계량기만 포함한다)까지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p> <p>③ 주 계량기(보호통을 포함한다) 이후의 급수설비(세대별 계량기와 보호통을 포함한다)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노후된(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만 해당한다) 주 계량기(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의 교체·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지자체명	내 용
	<p>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안산시</p>	<p>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9></p> <p>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 <삭제 2014.1.7.></p> <p>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p> <p>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